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2.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구미시립도서관의 행정기구 명칭 변경으로 조례 상 문구의 통일성을 기하고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조항의 신설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수정, 개관을 앞둔 작은 도서관과 관련된 조항 신설 등을 통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 변경

나. 구미시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칙에 위임하는 조항 신설

다.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라.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관련 안내문 추가 및 행정기구 명칭 변경 반영

마. 부속 시설(냉·난방비 및 빔 프로젝터) 사용료 신설 및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2조 및 제30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나.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한다)라 함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한다)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열람자료”라 함은”을 ““열람자료”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대출자료”라 함은”을 ““대출자료”란”으로 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명칭과 위치) 구미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으로, “받고자하는 자는 3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취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강당사용 변경·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때에는[별지제3호서식]에 의한”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사용료는[별표]”를

“사용료는 별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허가신청서[별지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면제신청서”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을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반환 할”을 “반환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설비 및 이의 철거를 하고자할 경우”를 “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철거하고자 할 때”로, “설비 및 철거를 하여야”를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철거일로 부터 7일 이내”를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로, “않을때”를 “않을 때”로 한다.

제10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불가할시”를 “불가할 시”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관장은 「도서관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구미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16조제4항 중 “당해 도서관의 장과 당해”를 “해당 도서관의 장과 해당”으로, “이용자중에서 당해”를 “이용자 중에서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임자의 잔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소집 할”을 “소집할”로 한다.

제19조 중 “안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단체(이하“수탁관리자””를 “단체(이하 “수탁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1조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관리) ①시장은 시민의 독서문화진흥과 지식정보에 대한 원활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작은도서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③시장은 작은도서관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보조자를 둘 수 있다.

제26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립도서관의 분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5.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립도서관 강당사용 변경·취소 신청서

1.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2. 귀 도서관 강당사용을 허가 받았으나 아래와 같이 사용 변경·
취소하고자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변경·취소내역

가. 사 유 :

나. 변경·취소전 :

다. 변경·취소후 :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구미시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시립도서관 강당사용 허가서

1. 사용인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2. 사 용 시 설 :

3. 사용목적및사유 :

4. 사용 허가 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 사용허가 기간(일 시간)

5. 사 용 료

사용시설명	사용료	산 출 기 초	비고

6. 허가조건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구미시립중앙도서관장(인)

[별지 제4호서식]

시립도서관강당 사용료 면제 신청서

단 체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사업 자등록번호)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연락처	TEL :	
행사의 명칭			참석 인원	H.P :	
사용기간 및 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			
사 용 시 설					
행사 주요내용 (지면 부족 시 별지 이용)					
면제 신청사유					

위와 같이 시립도서관사용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 : 구미시립도서관 강당사용허가 신청을 목적으로 한다.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3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강당사용 면제신청을 제공 받을 수 없다

구미시립중앙도서관장 귀하

[별표]

시설 사용료

시 설 명		사용기한	사용료	비 고
강 당		1시간	10,000원	초과 사용 시에는 1시간미만일 경우라도 1시간으로 한다.
부 속 시 설	조 명	1시간	15,000원	
	냉·난방	1시간	10,000원	
	빔 프로젝터	1회	10,000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 와 같다.	제1조의2(정의) ----- ----- 각 호-----.
1. “도서관자료” (이하 “자 료” 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말한다.	1. ----- -- 한다)란 「도서관법」 제2 조제2호에 따른 ----- -.
2. “열람자료” 라 함은 열람자 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 도서를 말한 다.	2. “열람자료” 란 ----- ----- ----- -.
3. “대출자료” 라 함은 이용자 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 열람 할 수 있는 도서 및 비 도서를 말한다.	3. “대출자료” 란 ----- ----- ----- -----.
<신 설>	제1조의3(명칭과 위치) 구미시립 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 로 정한다.
제2조(사용허가) ① (생 략)	제2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 음)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강당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변경·취소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3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3조(사용허가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도서관 강당 사용일과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 그 사용료는[별표]와 같다.

1. · 2. (생 략)

② (생 략)

제5조(사용료 면제) ①관장은 국

②-----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

---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
일 3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강당사용 변경·취소 ----
-----.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
----- 때에는 별지 제3
호서식에 따른 -----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허가제한) ---- 각 호
의 어느 하나-----
-----.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 각 호-----
----- 사용료는 별표-----.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료 면제) ①-----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제4조 규
정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
용 허가신청서[별지제4호서식]
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납부) ① (생략)

②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사용료의 100%

2. ~ 5. (생략)

제7조(허가의 취소등) 관장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
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 제4조에
따른 -----
-.

1. · 2.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
----- 허가신
청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
용료 면제신청서-----
-----.

제6조(사용료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반환할 -----.

1. ----- 그 밖에 -----

2. ~ 5. (현행과 같음)

제7조(허가의 취소등) -----
-- 각 호의 어느 하나-----

----- 그 밖에 -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
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1. (생략)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
능할 경우

3.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 6. (생략)

제8조(사용자의 설비 및 철거)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
비 및 이의 철거를 하고자할 경
우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
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
비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
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
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

-----.

-----.

1. (현행과 같음)

2. ----- 그 밖에 -----

3. ----- 각 호의 어느 하나-----

--

4. ~ 6.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자의 설비 및 철거) ①

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철거하
고자 할 때-----

-----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
하여야 ----.

②제1항에 따라 -----

-----.

③----- 제2항에 따른 -----

우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관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때에는 관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11조(입관의 거부)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입관후라 할지라도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생략)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현품이나 시가에

----- 철거일로부터 7일 이
내-----
----- 않을 때-----
-----.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 -----
--- 따라 -----

-.

제11조(입관의 거부) -----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도서의 망실, 훼손등에 대한 배상책임) 도서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도서로 변상케 하고 동일 도서 변상이 불가할시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관장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거 구미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②·③ (생략)

④위원은 당해 도서관의 장과 당해 도서관의 봉사대상 구역안의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당해 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

-----.

제14조(도서의 망실, 훼손등에 대한 배상책임) -----

----- 불가할 시-----

-----.

-----.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관장은 「도서관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구미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해당 도서관의 장과 해당 -----

-- 이용자 중에서 해당 -----
-----.

⑤-----

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u>전임자의 잔임</u>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직무) 위원회는 다음 <u>각호</u>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6. (생략) 7. <u>기타</u>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8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생략) ②정기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u>소집</u>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9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 <u>안에서</u>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도서관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u>단체(이하 “수탁관리</u>	----- <u>전임자 임기의 남은</u> -----. 제17조(운영위원회 직무) ----- ----- <u>각 호</u>----- ---. 1. ~ 6. (현행과 같음) 7. <u>그 밖에</u> ----- ----- 제18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소집할</u>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실비보상) ----- ----- ----- <u>안에서</u> 「구미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 -----. 제20조(도서관의 위탁운영) ① -- ----- ----- ----- ----- <u>단체(이하 “수탁</u>
---	--

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도서관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지원) 시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감독)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관리자” -----
-----.

② 제1항에 따라 -----

-----.

③ -----

----- 따라 -----
-----.

④ 제1항에 따라 -----

-----.

제21조(지원) ----- 제20조에 따라 -----

-----.

제22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라 -----

-----.

제23조(위탁운영의 철회)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철회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
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신설>

제25조 (생략)

<신설>

제23조(위탁운영의 철회) -----

-----.

1. ~ 3. (현행과 같음)

4. ----- 따른 -----

5. 그 밖에 -----

제25조(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

영·관리) ①시장은 시민의 독

서문화진흥과 지식정보에 대한

원활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조성에 노력하여

야 한다.

②작은도서관은 시장이 운영한

다.

③시장은 작은도서관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보조자를 둘 수 있

다.

제27조 (현행 제25조와 같음)

제26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u>1. 시립도서관의 분관으로서의 역할 수행</u> <u>2.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u> <u>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u> <u>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u> <u>5.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u>
--	--

관계법령

[도서관법] [일부개정 2011.4.5 법률 제10558호]

제2조(정의) 1.(생략)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생략)

②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공도서관(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9.9.21>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2011.3.29 법률 제10465호]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작은도서관 연간 운영비 총액 : 36,000천원
 -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 연간 10,000천원 정도
 - 작은도서관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 10,000천원
 - 작은도서관 운영 인건비 : 13,000천원
 - 도서정리용품 : 2,000천원
 - 기타(청소용품) : 1,0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작은도서관 연간 운영비가 1억원 미만으로서 연평균 4천만원 이내
로서 관련 규정에 의거 의안비용 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구미시립도서관 사서6급 류정숙